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0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김소희・임이자・이달희

김상훈 · 성일종 · 김 건

서천호 · 최수진 · 이성권

곽규택 · 김성원 · 박형수

고동진 · 김선교 · 조은희

우재준 • 김대식 • 장동혁

김장겸 • 최보윤 • 이헌승

권영세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하지만,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.

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동주택, 어린이집,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,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· 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8 신설). 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8(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) 공동주택, 어린이집,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· 운영할 것
 - 2. 입주자,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
 - 3.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
- 4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 - 3의3. 제14조의8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4조의8(공동주택 등 생활폐기
	물 수집 · 운반 관련 안전기준)
	공동주택, 어린이집, 학교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
	생활폐기물을 수집 · 운반하는
	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
	준수하여야 한다.
	1.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
	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
	설치・운영할 것
	2. 입주자, 학생 등의 안전을
	위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
	조치를 할 것
	3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
	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
	<u> </u>
	4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
	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
제6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66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u>3의3</u>. (생략)

4. ~ 19. (생 략)

3의3. 제14조의8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<u>3의4</u>. (현행 제3호의3과 같음)

4. ~ 19. (현행과 같음)